

환경오염(環境污染) 등 에 의한 농업피해 법률상식(法律常識)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인류의 능력이 지나치게 거대화되어 자연의 평형상태를 깨뜨린 것이다. 또 산업 발달로 대량의 오염물질이 자연계에 확산됨으로써 자연계뿐 아니라 인류 자신에게도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다. 근대화의 폐해로 생긴 다양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먹을거리의 생산지이자 물질순환의 핵심고리인 농업의 피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울산 울주군에서 1991년부터 양봉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한국양봉협회 정회원이기도 한 그는 어느날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진동으로 인해 벌들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양봉업을 하던 그가 벌 피해를 입은 것은 2002년 8월 경부터이다. 모 건설회사가 지방도로 4차선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양봉장과 불과 40m 떨어진 곳에서 계속적인 발파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40군의 봉군 가운데 20군이 도망을 가거나 폐사하였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사에 따른 분진 및 소음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무료 소송을 맡은 공단은 2004년 2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도망 및 폐사한 봉군 20군에 대한 피해액 3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과정에서 건설회사 측은 소음도가 양봉에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밀원식물이 없는 곳에서 양봉을 한다며 김씨를 비전문가로 치부하는 등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또, 진동측정기 및 소음측정기를 유리한 상황으로 설정, 측정 하여 그 수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공단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소음수치만으로도 일반 가축의 임계수준을 넘는 수준이고 꿀벌은 이보다 훨씬 민감하다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양봉피해를 인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찾아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어 상대방의 주장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폐사한 봉군의 시가 외에도 당해연도 꿀 수입 감소분 등을 추가해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결국 법원은 2004년 8월 24일 회사 측은 김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림으로써 결론이 났다. 이렇게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농축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도록 한다.

▣ 환경분쟁조정제도(環境紛爭調整制度)란?

- ▶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 ▶ 환경분쟁조정 기구로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환경분쟁조정 대상

- ▶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분쟁
- ▶ 환경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 일조·조망저해 분쟁(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등

▣ 업무별 처리기관(業務別 處理機關)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 2곳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정(調整)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알선(斡旋), 조정(調停)사무

▣ 분쟁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 인지(지방은 증지)를 붙여 신청
- 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신청서 양식 및 수수료 계산은 홈페이지 참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http://edc.me.go.kr>)
- 주소 : 우)427-729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 대표전화 : ☎ 02)504-9303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환경과 또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

▣ 분쟁 신청방법

▶ **알선** :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당해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하여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

▶ **조정** :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재정** :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청구기간 및 처리기간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 환경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은 알선 3개월, 조정 또는 재정은 9개월이다.

▣ 환경분쟁 처리절차(재정의 경우)

▶ 신청인이 재정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관 재정 위원 지명 ○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심사관 예비조사 ○ 전문가현장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당사자 심문 ○ 재정결정 ○ 재정문 송달

▣ 환경분쟁조정의 효력

▶ **재정의 효력**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 **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조정위원회가 함께 기명 · 날인하게 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같은 법 제33조)

▶ **알선의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종결된다.

▣ 농업관련 환경분쟁조정 사례

1. 도로공사 소음에 의한 젖소 피해

▶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이 도로공사 소음 · 진동으로 인해 젖소가 죽고, 유량생산 감소 등의 피해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용역 비용 등으로 9,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함

▶ 위원회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원유납입 실적, 젖소 사육일지 및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 등에 의해 폐사 및 유산 마리수와 유량감소 등을 확인 함.

▶ 또한 공사기간별 투입장비는 내역서를 기초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젖소의 폐사, 도태, 유산에 의한 피해와 성장지연, 유생

산성 저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5,8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

2. 공장폐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 ▶ 공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업인 21명은 평소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신길천에 유입된 공장폐수로 인해 벼가 폐사되고 논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공단 내 5개 업체를 상대로 4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함
- ▶ 오염물질이 유입된 우수토구와 농업용수 취수지점, 피해 논의 오염도 등을 조사한 결과 구리(Cu)성분 폐수로 인한 벼 피해와 공단입주업체의 구리폐수 배출 개연성이 인정됨.
- ▶ 다만 공장에서 유입된 폐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업인들의 과실을 10%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
- ▶ 피해액은 피해면적, 수확량 감소분(같은 지역 연평균 수확량 - 피해지역 수확량), 정부 수매가격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 총 8,430만원 중 농업인 과실부분 843만원을 공제한 7,587만원을 배상결정함.
- ▶ 또한 시에 대해서는 구리폐수로 피해가 발생한 논 전체에 대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함.

3. 교량설치에 따른 참외 일조피해

- ▶ 참외농사를 짓는 농업인 2명은 고속국도의 건설 중 농지 위에 설치된 교각으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여 참외가 열매를 맺지 않고 성장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 이에 대해 공사업체에서는 교량설치로 인한 음영은 오전 중 경작지의 일부지역에만 발생할 뿐이므로 수확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육은 일조량 외에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되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배상청구를 거부함.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참외재배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를 통해 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일조 시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일출 직후인 08시부터 13시까지의 일조방해가 심해 지온상승이 늦어 활착 및 조기생육이 늦고 수확시기 지연, 당도 감소,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얻음.
- ▶ 피해농지에서 현 작물의 계속재배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향후 피해는 검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공사시공 때로부터 재정일까지의 3년간 피해액 2,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음.

4. 통풍방해에 의한 사과 피해

- ▶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인근 지역 고속도로 성토로 인해 과수원 지역의 일교차가 심하여 냉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과농사를 못할 정도라며 토지수용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함.
- ▶ 고속도로 시공사에서는 통풍방해에 의한 냉해가 아니라 2006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자연해로 인한 것이며, 피해지역에 2005년도 16.1m의 성토가 시행되었으나 그 해에는 피해가 없었으므로 2006년 피해는 성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 ▶ 피해지역과 인근 마을(약 500m 떨어져 있음)의 기온을 7월~10월까지 측정한 결과 피해지역의 온도가 대체로 낮았으며 새벽 및 오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고, 심한 날은 12.1°C까지 차이가 났음.
- ▶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전문가와 과수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토작업으로 인한 과수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과수나무 고사, 소득감소, 냉해로 인한 농약사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06년도 피해액 4,18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음.
- ▶ 농업인 법률구조 신청처 : 농협홈페이지(<http://nature.nonghyup.com>) 또는 전국 농협지점(중앙본부 ☎ 02-2080-5531)